

규제의 이익집단 이론과 공정거래법

전 용 덕*

〈 목 차 〉

- | | |
|--------------------|------------------|
| I. 서론 | 1.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 |
| II.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과정 | 2. 경제력 집중 억제와 수출 |
| III. 공정거래법을 보는 시각 | 3. 도서 정가제 |
| IV. 몇 가지 가설 | V. 요약과 제언 |

요약문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년동안 공정거래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갭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실증적 검증을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법 조항 중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 정가제가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관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실증적 연구를 뒷날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지가 20년이 가까워오면서 공정거래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갭을 이론적 관점에서 만이라도 메워보고자하는 시도이다.

법이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제나 법이 공익(public-interest)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나 법이 사익(self-interest) 특히,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이 사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시각을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에 적용하여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순서는 다음 절에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3절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익설과 사익설로 나누어 소개하고, 4절에서는 사익설을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 정가제에 응용하여 실증 분석을 위한 가설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과정¹⁾

1963년 발생한 소위 '삼분사건'이 공정거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삼분사건이란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생산하던 대기업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일부 품목을 통제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종합물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8월에 서울대 부설 연구소가 '공정거래법시안'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안은 재계의 반발에 밀려 내각에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그 이후 정부의 공정거래법안이 1966년, 67년, 69년, 71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의 재계란

1) 여기에서 역사적 사실 부분만 김병배(1995)를 참고하였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해와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공정거래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973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는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법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1975년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공정거래라는 말이 법률 용어로 정식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으로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매우 간단하고 불완전한 조항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행 실적도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75년 법률에서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고 내용을 대폭 보충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당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대기업이 소유한 중화학 공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고, 임시입법기구를 통해 대기업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은 여론의 지지를 의식하여 다수인 중소기업집단과 독립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²⁾ 공정거래법이 대규모 기업집단과 독립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러한 환경의 산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해석은 직관적이고, 이 논문에서 그러한 해석을 검증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공정거래법을 보는 시각

스티글러(Stigler(1971), 펠츠만(Peltzman(1976)에 의하면 규제는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해 포획되어 정부에 의해 발효된다. 이것을 규제의 포획이론(the capture theory of regulation)이라 부르거나 또는 경제 규제의 이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익 집단은 로비 과정을 통해 표, 정치적 지지, 선거 자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획득한다. 모든 규제는 소득 재분배 장치이기 때문에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게 만든다. 물론 소득의 대부분은 규제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집단에게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나 공무원은 표나 정치적 지지를 얻거나

2) 여기에서 독립기업이란 기업 집단이 아닌 독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규제 자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규제의 포획 이론이 지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이 규제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법규이지만, 규제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기업이나 생산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겠고, 이익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도 다른 규제나 법규와 같이 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엔타이트러스트법(antitrust laws)을 이익 집단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노력이 법경제학계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³⁾ 엔타이트러스트법이 법에 명시된 대로의 순수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시각보다는 이익 집단의 이익을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엔타이트러스트법이 법에 명시된 대로의 공익(public-interest)보다는 사익(self-interest)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해 엔타이트러스트법의 기원을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주류 연구 패러다임과 너무 달라 학계에서는 아직 소수 견해라고 하겠다.⁴⁾

다른 하나의 시각은 공정거래법이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이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부분적이지만 이철송(1995)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기 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직관에 의존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앞 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연구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의 기원이나 원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공정거래법도 미국의 엔타이트러스트법과 같이 사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관점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누구의 이익을 돌보는 장치나 수단이 되게끔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3공화국 시대에는 대규모 기

3) 미국에서는 특정 분야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20여 개의 특별 법률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셔먼법(The Sherman Antitrust Act), 클레이튼법(The Clayton Antitrust Act),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총칭하여 엔타이트러스트법이라고 한다.

4)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참고문헌 7), 8), 9)를 참고하라.

업집단이 정치력을 발휘했다. 다른 어느 집단보다 대규모 기업 집단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가 3공화국 시대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행위를 매우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5공화국은 3공화국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특히 5공화국 초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5공화국 초기에는 정권의 정통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가 더 중요한 때였다. 즉, 5공화국 초기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보다 정치적 지지를 위하여 절대 다수인 독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였다는 것이다. 5)

요약하면 필자는 공정거래법이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결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IV. 몇 가지 가설

만약 공정거래법이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떤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공정거래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법시에 많은 이익 집단이 관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이익 집단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 정가제와 관련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먼저 경제력 집중이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를 보기로 하자. 경제력 집중이란 소유 집중과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분류하고, 소유 집중에는 부의 세습, 부의 형성 과정,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과 같은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선단식 기업경영은 비관련 다각화, 내부거래, 상호 출자, 상호 채무 보증, 전문화 저하, 재무구조 악화, 중소기업과의 균형적 발전 저해 등의 기업경영 행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5)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을 찾자, 5공화국 정권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였다. 그 점에서 5공화국 정치를 들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위하여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직접상호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의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바라보는 방법은 앞에서 본 두 가지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철송(1995)은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이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철송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은 기업집단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쟁 압력을 견디다 못한 중소형 기업집단과 독립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포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기업집단과 독립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여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력 집중 억제는 그 대상이 30대 기업집단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기업집단과 독립 기업에게는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경제력 집중 억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통해 경제의 효율이 증진(efficiency enhancing)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경제력 집중 억제가 미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각종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제도의 시행은 경제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가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조항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영향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 억제가 중소 규모의 기업집단과 독립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득 재분배로 인한 효율성 하락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1981년 4월에 제정된 점을 고려하고,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나면, 1982년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조항과 역함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모델로 표시하면

$$GR_t = f(XA_t, D1_t).$$

여기에서 GR_t 는 연도별 경제성장률 변수이고, XA_t 는 연도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이고, $D1_t$ 는 연도별 더미 변수로서 1981년까지는 값이 0이고 1982년 이후는 값이 1이다. 여기에서 더미 변수가 경제력 집중 억제의 효과를 잡는 변수로

서, 경제력 억제 조항이 사익을 위하여 발효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기대값은 음이 예상되고, 반면에 경제력 억제 조항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값이 양이 예상된다.

2. 경제력 집중 억제와 수출

경제력 집중 억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고 하겠다.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이 사익을 위하여 발효된 것이라면, 그것이 대규모 기업 집단의 효율을 떨어뜨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앞의 경우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나면, 1982년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의 수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조항과 역함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모델로 표시하면

$$X_t = f(XB_t, D2_t).$$

여기에서 X_t 는 연도별 수출 변수이고, XB_t 는 연도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이고, $D2_t$ 는 연도별 더미 변수로서 1981년까지는 값이 0이고 1982년 이후는 값이 1이다. 여기에서 더미 변수가 경제력 집중 억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잡는 변수로서, 경제력 억제 조항이 사익을 위하여 발효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기대값은 음이 예상되고, 반면에 경제력 억제 조항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값이 양이 예상된다.

3. 도서 정가제⁶⁾

1960-70년대에 걸쳐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서련)는 도서의 정가 판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많은 미비점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서련은 여러 번 출판사협회에 도서정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7년 12월 1일부터 서련이 주축이 되어 도서의 정가 판매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정가 판매제는 서련 회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6) 일반적인 명칭은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이나 여기에서는 도서 정가제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구도 서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의 도서 정가제가 서련쪽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출판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서 정가제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도서 정가제가 효율을 증진시켜준다는 주장이다. 도서 정가제가 반품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소매업자의 판매전 서비스나 시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준데 대한 보상 수단으로 도서 정가 판매제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가 어떻게 이용되든 그것이 도서 판매에 있어서 효율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적상들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유통마진을 독점 수준으로 올려 서적상들의 이윤을 늘리려는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효율 증진 이론이 더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많은 서적상들의 일치된 행동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가 효율을 증진한다는 이론은 출판사가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도서 정가제가 법으로 허용되기 이전에는 출판사는 도서 정가제를 회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 서련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도서 정가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이 점이 도서 정가제가 효율을 증진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련이 도서의 정가 판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번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70년대초까지만해도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과 서적 조합원의 의견 불일치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들의 설립으로 중소형 서점들이 심한 경영압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1970년대 후반에 오면 환경의 변화로 출판사 단체에 비해 서련의 정치적 힘이 더 증가하고 있었고 단체 행동의 필요성도 훨씬 커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서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도서 정가제를 공정거래법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서 정가제는 중소 서적상의 모임인 서련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 로비를 한 결과라고 하겠다. 도서 정가제가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것은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적상들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가 효율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도서의 가격은 내려가고 산출량은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도서정가제가 출판사와 서점의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효율을 증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고, 그것은 도서

가격의 하락, 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도서 정가제가 서적의 소매상 즉, 서점만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이라면 도서의 가격은 올라가고 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작은 서점이 큰 서점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서 정가제를 입법 과정에서 포획했다면 효율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가격은 올라가고 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 서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책의 판매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도서 정가제가 카르텔의 일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공정거래법 제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의 정가제는 서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필자의 주장이 맞다면 도서의 가격은 올라가고 산출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출판사가 자신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 즉,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 법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이다. 실증 분석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습 참고서, 만화와 무협지, 여성 잡지 등이 서점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책에서 도서 정가제가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적 소매상의 독점 이윤을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미 서적, 사전, 참고서, 베스트 셀러, 전집류 등은 판매 전망이 비교적 확실하여 도서정가제로 보호가 필요 없는 서적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서적까지 도서정가제에 포함한 것은 서련의 압력에 출판협회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다.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인 1987년에 1억4천5백만 부가 발행되었으나 1993년에 1억1백만 부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이 때 경제성장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판계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모형으로 표시하면

$$BPt = f(XCt, D3t) \text{ 또는}$$

$$BQt = f(XDt, D4t).$$

여기에서 BPt, BQt는 연도별 도서의 가격과 출판량이고, XCt, XDt는 도서의 가격과 출판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하고, D3t, D4t는 도서정가제 실시를 대변하는 더미 변수로서 1981년까지는 값이 0이고, 1982년 이후는 값이 1이다. 여기에서 더미 변수는 도서정가제가 도서의 가격과 출판량에 미치는 효과를 잡는 변수로서, 도서정가

제가 서적상의 사익을 위하여 발효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기대값은 음이 예상되고, 반면에 도서정가제가 효율을 위한 것이라면 더미 변수의 기대값은 양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도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겠다.

V. 요약과 제안

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의 효과보다는 원천 또는 만들어진 동기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과 같이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이익 집단 이론을 응용하여 한국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 정가제가 사익설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다음 할 일은 이 논문에서 제시된 가설을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로비나 표결 결과 등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현행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러한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제 행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부분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모순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⁷⁾ 만약 공정거래법이 사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입증된다면 공정거래법의 모순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과 논리적으로 너무나 잘 일치한다.

공정거래법 입법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만약 사익설 관점이 공정거래법을 지지한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승자는 30대 이하 기업 집단과 독립 기업이고, 패자는 30대 기업 집단이라고 하겠다. 도서 정가제에서 승자는 소형 서적상들이고, 패자는 대형 서적상들과 강제로 도서 정가제를 실시하게 된 일부 출판업자라고 하겠다.

7) 이 점에 대하여 전용덕(1997)을 참고.

참 고 문 헌

- 1) 김병배, 「알기쉬운 공정거래」, 중앙일보, 1995.
- 2) 신광식, “도서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한국개발연구」, 1991 여름, 141-161.
- 3) 이철송,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한국경제연구원, 1995.
- 4) 전용덕, 「공정거래법의 모순」, 자유기업센터, 1997.
- 5) Bork, R., *The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New York: Basic Books, 1978.
- 6) Boudreaux, Donald J. and Dilorenzo, Thomas J., “The Protectionist Roots of Antitrust,”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6, no. 2, pp. 81-96, 1993.
- 7) Dilorenzo, Thomas J., “Economic Competition and Political Competition,” *Public Choice*, vol. 40, pp. 203-209, 1983.
- 8) -----, “The Origins of Antitrust: An Interest-Group Perspectiv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5, pp. 73-90, 1985.
- 9) ----- and High Jack C., “Antitrust and Competition, Historically Considered,” *Economic Inquiry*, vol. 26, no. 3, pp. 423-435, July 1988.
- 10) Peltzman, S.,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August 1976.
- 11) Stigler, G.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2, pp. 3-21, August 1971.
- 12) Telser, Lester G., “Why Should Manufac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pp. 86-105, October 1960.

